

[별지 제71호서식]

(앞 쪽)

<p>제 호</p> <p>명예야생동·식물보호원증</p>	<p>사 진 (25mm×30mm)</p>
<p>성 명 주민등록번호</p> <p>위 사람은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야생동·식물보호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p> <p>[인]</p>	

81mm×55mm(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)

(뒤 쪽)

특기사항

1. 본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.

가.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등의 보호·번식에 관한 주민의 지도·계몽

나. 일반주민 및 수렵자의 지도

2. 불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